



왕저안과 위생부 국제교류와 협력센터 등 상업비밀침해 분쟁 사건

39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중국 최고인민법원	사건번호	(2013)民申字 第1238号
판결 일자	2013. 12. 18.	판결 결과	재심신청 기각 (권리자 패)
1심 원고 (재심신청인)	왕저안		
1심 피고 (재심 피신청인)	1. 위생부 국제교류협력센터, 2. 리홍산, 3. 위엔쥘린		
참조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부정당경쟁법 제10조, 민사소송법 제200조, 제204조		
영업비밀	경영정보		
키워드 (Keyword)	상업비밀(商业秘密), 직장 내 경쟁(岗位竞争), 시장경쟁(市场竞争)		

02 사건 개요

왕저안이 위생부 국제교류 협력센터(이하 ‘위생부 국제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본 소송의 쟁점이 되는 《위생부 국제교류센터 분배제도 개혁방법》을 단독으로 연구하여 완성하였다. 이에 왕저안은 위생부 국제센터가 왕저안의 연구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위생부 국제교류협력센터 인사제도 개혁방안》을 완성하였다고 주장한다.

위생부 국제센터는 왕저안의 연구가 단독 연구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직무의 일환으로 완성된 것으로 비밀정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고, 1심 2심 모두 왕저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왕저안이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신청을 한 것이다.

03 주요 쟁점

재심 신청인(1심 원고)



재심 피신청인(1심 피고)

왕저안이 독립적으로 연구하여 관련 상업 비밀을 완성하였다.

리홍산이 원고가 완성한 상업비밀을 편취하였고, 위생부 국제센터가 원고의 상업비밀을 이용하여 수익을 취득하였다.

- 왕저안 주장하는 상업비밀은 왕저안이 위생부 국제센터에 근무할 당시 위생부 국제센터의 직무로 탄생한 것이다.

- 왕저안이 주장하는 상업비밀은 공사 내 공개토론을 거쳐 상급 주관부문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개인 소유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밀성을 가지지도 않는다.

04 판결 요지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은 경영자의 '경영행위'를 규율한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왕저안은 <반부정당경쟁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품경영 또는 영리성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영자가 아니고, 위생부 국제센터와 <부정당경쟁법>상 시장경쟁관계를 형성하지도 않는다. 시장경쟁이 아닌 공사 내부의 직책 경쟁은 <반부정당경쟁법>이 규율하는 '시장경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왕저안과 위생부 국제센터는 노동계약관계에 있고, 왕저안이 기초하여 제정된 본 사건의 상업비밀이라는 것은 직무를 이행하여 완성한 임무이므로, 위생부 국제센터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반부정당경쟁법>이 규정하는 '부정당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왕저안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05 Key Point

본 판결은 <반부정당경쟁법>의 입법목적은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평한 경쟁을 장려, 보호하고 부정당한 경쟁행위를 제지하여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반부정당경쟁법>의 대상은 시장경쟁영활동에 참여하는 시장주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시장경쟁주체 사이의 '시장경쟁'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반부정당경쟁법>이 규율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를 실시하고 있다.

결국, 직장 내부 경쟁에서 관련된 정보가 누설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상업비밀 침해라는 주장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